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분야 []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